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6. 1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35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중인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위탁 개요

위탁시설명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2호점·3호점
위탁기간	2025.8.1.~2028.7.31.(3년 예정)
위탁사무 내용	-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사업운영 및 시설관리 - 위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무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

나. 소요예산 : 737백만원(구비) * 3년간 추계

(단위: 백만원)

연 도 별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합 계	737	610	21	106	
2025년	104	85	3	16	5개월
2026년	245	203	7	35	
2027년	245	203	7	35	
2028년	143	119	4	20	7개월

4.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필요성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위탁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음.

연 번	시 설 명	위 치	설 치 규 모
1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	신길3동 신청사 (가마산로 483)	91㎡, 2타석
2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2호점	신길3동 구청사 (산길로41라길 13-8)	237㎡, 5타석
3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3호점	대림1동 주민센터 (다지털로 441)	130㎡, 3타석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위탁사무는 구민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행위로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서도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의계약을 통해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를 선정·위탁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음.
- 수탁 사유를 살펴보자면 실내파크골프장은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낮은 고령층의 이용이 많아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및 실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기관으로 고령자·장애인 등의 실내체육 수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6. 1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36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영등포문화재단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운영재원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설립 및 위탁)

다. 사업내용

- 공공 및 작은도서관 시설 운영·관리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

라. 출연 필요성

- 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25.12월 개관 예정)의 인건비, 운영비를 확보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 및 운영 도모
- 신길도서관 냉난방시스템(GHP) 가동에 필요한 가스요금 부족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마.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소요예산)

-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 330,047천원
 - 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 운영: 319,047천원
 - 신길도서관 운영: 11,000천원

※ 2025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운영재원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설립 및 위탁)

5.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영등포문화재단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단위: 천원)

출연금액	세부내역	
330,047	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 인건비	135,920
	여의도브라이트 도서관 기본경비 및 문화사업비	183,127
	신길도서관 공공운영비	11,000

- 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은 올해 12월 개관 예정으로 그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을 확보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신길도서관('25.6. 개관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내 위치)은 냉난방시스템(GHP) 가동에 필요한 가스요금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므로 구민의 문화 향유 환경 조성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위 출연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